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8-794 제안년월일 : 2022. 1. 10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, 정책지원관 배치 및 임명범위를 규정하고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파견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)
- 정책지원관 배치, 임명 관한 내용 신설(안 제5조)
- 직원의 파견요청 근거 신설(안 제6조)
-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1, 2
- 4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 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- 5. 현행조례 : 붙임 4
- 6. 관계법령 : 붙임 5
- 7. 참고자료 : 붙임 6

[붙임 1]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90조 및 제91조" 를 "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" 로 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둔다.

-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-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으며,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직급의 정원)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를 제8조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원활한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90조 및</u> <u>제91조</u> 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는 3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으로 정한다. 〈신 설〉 제6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6조(직급의 정원)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7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원활한 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안산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제8조(시행규칙)(현행 제6조와 같음)